

웅지세무대학교 상 조 회	웅 지 상 록 회 회 칙	제정일자	04.06.01
		최근개정	16.01.01

웅지상록회

제1조(명칭) 본회는 웅지상록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 <개정 2011.06.24>

제2조(목적) 본회는 교직원 상호간 친목도모, 상부상조 및 인화단결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회원구성) ① 본회의 회원은 학교법인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임용과 동시에 자동 입회된다. 단, 겸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을 결정한다.

② 회원이 퇴직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.

③ 상조회 임의가입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부터 상조회 가입일까지의 상조회비를 소급하여 징수한다. <신설 2014.01.01>

제4조(임원)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(1인), 감사(1인), 간사(2인), 운영위원(6인)을 둔다.

<개정 2011.12.08>

② 운영위원은 교원 2인, 일반직 2인, 계약직 2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12.08>

제4조의2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의3(운영위원회의 조직)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(감사제외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원선출)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제6조(임원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감사는 본회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감사한다.

③ 운영위원은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
④ 간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임기) 임원의 결원시 새로 부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기타 임시총회,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제9조(기능)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결산보고,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을 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부여받은 사항을 심의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.

제10조(의결)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② 임원은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.

③ 총회 및 임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.

제11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. <신설 2011.12.08>

1. 통상회비 : 교원 및 직원중 계장 이상은 월 이만원(₩20,000), 기타직원은 월 일만원(₩10,000)을 납부한다.
2. 임시회비 : 예산부족이나 기타 업무상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.
3. 입회비 :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입회비를 징수한다.
 - 가. 교원 및 직원중 계장 이상 : 일십만원정(₩100,000)
 - 나. 기타 직원 : 오만원정(₩50,000)
4. 상조회비 징수는 매월 25일로 하며 25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.
5. 휴직자의 회비 징수는 기준일을 급여일로 한다.(휴직시 급여일 이전에 휴직시 해당월 징구하지 않음, 급여일 이후는 징구. 복직 시 급여일 이전에 복직 시 징구, 이후에 복직시 징구하지 않음) <신설 2014.01.01>

제12조(재정관리) ① 통장은 회장명의로 하고 예금통장은 간사가 그리고 인장은 회장이 각각 보관한다.

② 이 통장은 회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.

③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④ 본회의 운영진은 매년 결산을 하여 정기총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회비, 찬조금 내역
2. 기금의 이자수입액
3. 기금의 현 잔액

4. 기금의 지출내역
5. 입출금 통장사본

제13조(부조사업) ① 본회에서는 부조사업을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종류별 지급기준은 [별표1]과 같다. <개정 2011.12.08>

1. 혼인축의금
 2. 회갑(칠순)축의금
 3. 조의금
 4. 재직기념품(퇴직시)
 5. 입원(병문안)
 6. 기타
- ② 기타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4조(대여) 본회는 회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.

1. 대여대상은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.
2. 대여한도액은 본회기금의 70% 이내로 하며, 최대대여신청금은 200만원까지 하며, 최저대여신청금은 50만원이상으로 한다.
3. 대여금에 대한 이율은 사학연금 이율+1%로 하며,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시 연2%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.
4. 대여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만료 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년 2%의 이율을 가산하여 매년 대출일에 이자를 납부한다.<개정 2016.01.01>
5. 대여신청은 웅지상록회기금대여신청서(서식1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본회의 회장, 간사가 심사하여 집행한다.
6. 본회는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여제도를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의2 (대여신청 유예)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대여한 회원은 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여신청 할 수 있다.

②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1.01>

제15조(지급신청) ① 본 회칙에서 정하는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조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부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사전 제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.

③ 신청서는 [별표2]의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급방법 및 순위) ① 본 회칙에 의한 지급은 통화로써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회장은 부조금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.

② 유족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민법의 유족보상순위를 준용한다.

제17조(중복사유에 대한 지급) 회원부모의 칠순, 팔순은 친부모 또는 시부모 또는 빙부, 빙모 중 선택적으로 2인으로 제한한다. 기타 동일한 사유 또는 2개 이상의 지급 사유가 발생 시 각각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의 횟수를 총 2회로 제한한다. 입원(병문안)의 경우는 지급 횟수를 퇴원일자 기준으로 1년에 2회로 제한한다. <개정 2016.01.01>

제18조(청구기간) 본 회칙에 의한 청구권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 단, 휴직자는 복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1.12.08>

제19조(법령 및 타 규정과의 관계) 본 회칙에 의한 지급은 법령 및 기타규정에 의한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지급범위 및 적용의 제한) ① 회사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그 지급이 부당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친목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.

② 부당한 지급에 대해서는 친목회원 중 누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 제기 시 회장은 즉시 본 회의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이의 제기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.

제21조(지급) 회장 및 총무에게 월 50,000원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. <신설 2010.12.18>

제22조 (부조사업 외 지출) ① 부조사업 외 기타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.

② 경조사로 인한 출장은 대학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실비로 정산한다.

③ 출장은 회장을 포함, 운영위원 4인 이내로 제한 한다.

④ 임원회의 식비는 1인 기준 20,000원으로 하며, 년 간 4회로 제한한다.

<조문신설 2011.12.08>

부 칙 <1판-제정 2004.06.01.>

본 회칙은 200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판-개정 2005.10.19.>

본 회칙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 2006.12.01.>

본 회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4판-개정 2007.12.01.>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2조(회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이미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겸임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회 할 수 있으며, 탈회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한다. 단, 탈회후 재가입은 불허한다.

부 칙 <5판-개정 2009.01.01.>

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6판-개정 2010.01.01.>

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7판-개정 2011.01.01.>

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8판-개정 2012.01.01.>

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9판-개정 2013.01.01.>

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10판-개정 2014.01.01.>

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<11판-개정 2016.01.01.>

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<별표1>

부조금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	지 급 액	비 고
혼인	회원의 혼인	500,000	
	자녀의 혼인	300,000	
회갑(칠순)	회원 및 배우자의 회갑	500,000	
	회원부모의 칠순or팔순(선택)	300,000	양가 부모
조의	회원의 사망	1,000,000	
	회원 배우자의 사망	700,000	
	회원부모 및 자녀 사망	500,000	
	배우자의 부모 사망	500,000	
재직 기념품	재직기간 2년이상 3년미만	100,000	퇴직시
	재직기간 3년이상 6년미만	200,000	퇴직시
	재직기간 6년이상	300,000	퇴직시
입원 (병문안)	본인 및 배우자	100,000	7일이상 입원 시
	회원부모 및 자녀	100,000	
출산	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	100,000	

- 결혼은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에는 결혼식 거행 후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결혼을 목적으로 퇴직한 여사원이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혼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축의금을 지급한다.
- ~~3. 삭제 <2007.11.30>~~
- 부조금 지급기준의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.
 - 결혼, 조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, 실질원칙에 의하여 지급하되 경조금 지급 신청서는 징구한다.
 - 회갑, 칠순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경조금 지급 신청서를 징구한다.
- 부조금은 부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.

<별표2>

경 조 금 지 급 신 청 서

20 년 월 일

결 재	간 사	회 장

인 청	소 속		직 위	
	성 명		연락처	
신 청 사 항	☐ 결혼 ☐ 회갑 ☐ 칠순(팔순) ☐ 조의 ☐ 출산 ☐ 입원 ☐ 기타()			
	본인과의 관계		경조장소	
	경조일자	년 월 일	신청금액	금 원정(W)
	입금계좌번호	()은행 :	예금주 :	
※ 첨부서류 ① 결혼, 조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청첩장(초대장), 경조장소 참가자의 증언 등 실질원칙에 의하여 지급함. ② 회갑, 칠순은 호적등본 1부 제출.				

웅지세무대학교 교직원 상조회

경조금지급기준표			
구 분		지 급 액	비 고
혼인	회원의 혼인	500,000	
	자녀의 혼인	300,000	
회갑(칠순)	회원 및 배우자의 회갑	500,000	
	회원부모의 칠순or팔순(선택)	300,000	양가 부모
조의	회원의 사망	1,000,000	
	회원 배우자의 사망	700,000	
	회원 부모 및 자녀 사망	500,000	
	배우자의 부모 사망	500,000	
재직 기념품	재직기간 2년이상 3년미만	100,000	퇴직시
	재직기간 3년이상 6년미만	200,000	
	재직기간 6년이상	300,000	
입원 (병문안)	본인 및 배우자	100,000	7일이상 입원시
	회원 부모 및 자녀	100,000	
출산	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	100,000	

경조금수령증

☐결혼 ☐회갑 ☐칠순 ☐조의 ☐출산 ☐입원 ☐기타()

웅지세무대학교 교직원 상조회

수령자		소 속 / 직 위	/
수령일	.	수령액	금 원정(W)

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함을 확인함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<서식1>

웅지상록회 기금 대여 신청서				
상 환 기 간 : 1 년				
신 청 인 교 직 원		신 청 금 액	지급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	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만원	은 행 명	계 좌 번 호
※ 교직원 주소 :				
※ 대여 사유 :				
본인은 웅지상록회의 대여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대여금의 상환종료시까지 아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 1. 본인은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하여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할 것을 동의함. 2. 본인은 웅지상록회원의 자격이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여금(대여이자 포함)에 대하여 일시상환할 것을 동의함(자격상실일 기준). 3. 본인은 대여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웅지상록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것에 동의함. 20 . . . 신청인 성명 (인)				

심 사	결 정 금 액	상 환 금 액	상 환 방 법
확 인	만원	만원	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금액을 만기일시 상환
신청시 유의사항	1. 대여제외대상 ○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액이 50만원 미만인 교직원 2. 결정금액은 상조회기금의 사정에 따라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3. 본인은 웅지상록회원의 자격이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여금(대여이자 포함)에 대하여 일시상환할 것을 동의함(자격상실일 기준).		
			간 사 회 장